

2026 VOL 39

해외 관세동향

Overseas Customs Trends



CONTENTS



01. 북미(미국 및 캐나다)

-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2026.1.1.)에 따른 안내
- (캐나다) 철강 파생제품 관세부과 동향(2025.12.26.~)



02. 중국

- 「15차 5개년 계획」 관련 향후 해관정책방향(해관총서장 언론인터뷰)
- 「해관감독화물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고」 발표
- 중국의 「2026년 관세조정방안」 공고(2026.1.1. 시행)



03. 일본

- 관세국, 자금세탁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25.12.4.)
-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 밀수 적발(언론보도, 2025.12.11.)



04. 인도네시아

- 금 수출세 부과 시행(2025.12.23. 시행) 및 대내외 동향
- 면직물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발효 동향
-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참고사항



05. 태국

-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폐지(2026.1.1. 시행)



06. EU(유럽연합)

- EU 집행위, 비EU국가 대상 식품 수입 통제 강화 동향

01. 북미(미국 및 캐나다)

#무역협정 #상호관세 #관세율 #MMPA #철강관세

출처 :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2026.1.1.)에 따른 안내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게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

가. 제도 개요

- 미 국제무역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내려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근 5개 어장의 꽂게(swimming crab)에 대한 180일간 유예를 제외하고는 46개국에 걸친 240개 어장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가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
- 수출확인증명서(COA, 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는 관련 국가에 수입금지가 내려진 경우 미국으로 반입이 허용될 수 있는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 동 문서는 해당 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수산물 어종 또는 그러한 어종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입증
- 미국 국립해양수산국은 관세국정보호청과 협업하에 금지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될 경우 COA를 필요로 하는 HTS 코드를 식별
 - COA는 Document Image System에 업로드하거나 입국항에서 CBP에 직접 제출해야 함

나. 자주 묻는 질문

- 항구에서 수입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 HTS 코드와 원산지국가(COO)를 통해 미국 수입 시 COA가 필요한 품목이 식별
- 특정 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
 - 미국 해양수산국 홈페이지에 특정 어장, 수역, 어종, harvest nation, 원산지국가 등에 대한 설명을 참조
- COA 요건이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에 통합되는지
 - 현재 ABI 부분은 제공하지 않으며(there is no ABI component), COA가 누락된 수입은 통관 거부
- 2026년 1월 1일 전에 어획된 제품의 경우
 - 마찬가지로 COA가 필요하므로 미국 도착 전 어획/수출국과 협조를 통해 COA를 준비해야 함
- COA 양식 작성 요령
 - 정부관계자가 작성하고, 어획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수입금지 대상 품목이 아님을 증언해야 하며, 어획국의 정부관계자와 수입자가 모두 서명해야 함

● COA 양식에 서명할 정부관계자를 찾는 법

- 해양수산국은 외국 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할 것임

● COA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 다른 문서로 대체할 수 없음

● 중개국(intermediary nation)

- 미국으로 수출 전 수산물이 가공되거나 환적되는 국가를 말하며, 수입 금지대상 품목은 경유국을 통해서도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음
- 수입금지 대상 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 중개국을 해양수산국이 식별할 것이며, 그러한 국가에게 어떤 제품이 수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통보할 것임

● 동등성 판정을 받은 국가의 경우

- 모든 어장에 대해 동등성 평가를 받은 국가(일본, 태국, 캐나다 등)로부터 직수입시에는 COA가 필요하지 않음. 단, 수입 제한 대상 국가에서 가공을 거치는 경우 COA를 요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오징어에 대한 제한이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잡은 오징어가 수입 제한 대상인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COA가 필요하며, 말레이시아 또는 한국에서 발급한 COA가 인정됨

※ 문의처

- 해양포유류보호법 집행 일반에 대한 문의 MMPA.LOFF@noaa.gov
- COA에 대한 문의 trademonitoring.support@noaa.gov

(캐나다) 철강 파생제품 관세부과 동향(2025.12.26.~)

● (부과방법) 모든 국가에 적용, 전체 가치에 대해 25% 부과

- 관세부과 방법은 추후 캐나다 세관 공고(customs notice) 확인 필요

● (대상) 캐나다 품목번호 8단위 기준 61개 품목*

*대캐나다 수출의 약 0.5% 수준(HSK 6단위 산출, '25.11월 기준)

구분(HS 2단위)	품목(개)	세부 품목
73류(철강제품)	45	나사, 볼트, 너트 등
94류(가구, 조명기구 등)	12	금속제 프레임 의자, 가구 부분품 등
83류(비금속 제품)	1	건물용 금속제 장착구
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1	철강심이 있는 알루미늄 케이블
72류(철강)	1	냉간평판암연제품
39류(플라스틱 및 제품)	1	문, 창문, 문틀
총계	61	

● 적용 제외

- 관세부과 시행일(2025.12.26.) 기준 캐나다로 운송 중인 상품
- 다른 특별 부과 명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철강 추가관세 조치 등)
-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수입되어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
 - ② 항공기, 비행훈련기, 우주선 및 관련 부품 제조용
- 제98류(여행자 휴대품, 이사회물 등 비상업적 물품)에 분류되는 물품

※ 캐나다는 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TRQ 적용 기준도 축소,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 신규 관세부과 발표

02. 중국

#정책방향 #해관감독화물 #관세조정방안

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5차 5개년 계획*’ 관련 향후 해관정책방향(해관총서장 언론인터뷰)

*중국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2026년~2030년간 경제성장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가. 중국이 직면한 환경

1) 글로벌 무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

- 지난 3년간 세계 무역질서는 미국·유럽의 공급망 재편 압력, 전략물자·핵심기술 통제 확대, 지정학 불안정세, 국제 해상·육상 운송리스크 증가, 신흥기술(반도체·배터리·AI)의 지정학화 등으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
 - 이 과정에서 국경 통제, 원산지 검증, 전략물자 관리, 생물안전 검역 등 국경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
 - 중국 해관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개방 확대'와 '안전 관리'라는 상충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

2) 중국의 경제·무역 구조 변화

- 중국은 2024년에도 총 무역액 43.8조 위안으로 세계 1위를 유지. 단순 무역규모보다 신에너지차·배터리·태양광 등 신 3종 수출이 고속 성장
 - 그린무역·중간재무역 확대, 소비구조 고도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해외창고 등 신업태 확산, 산업 공급망 안정성 중요성 증대 등 많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남
- 이러한 환경에서 해관은 규제기관, 산업생태 지원기관 글로벌 물류 허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3)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방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개방 전략의 최고 상징 프로젝트로 평가되며, 2025년 12월 18일 섬 전체 전면 봉관이 예정되어 있음. '봉관'은 곧 전 섬이 하나의 해관 특별구역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조치이며, 해관총서의 역할이 극도로 확대되는 시점임

나. 중국 해관정책의 4대 핵심의제

- 해관총서장은 인터뷰에서 중국 해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전과 안전의 통합' 그리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개방'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 향후 해관의 전략을 크게 4개 영역으로 소개

1) 국문 안전 강화

- 해관은 국가의 대외 개방 첫 관문이자 국가안전의 최전선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불확실성이 증가 하므로 전요소 위험관리, 국경 차단 능력, 검역·품질·생물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함
- 마약·폭발물·위험물·관세사기 등 중대위험 및 밀수에 대한 고강도 단속 지속하고 '출입국 검역·생물 안전·품질 안전' 등 주요 관문을 강화해 국문 안전의 첫 방어선을 확실히 지킨다는 입장
 - 이는 해관의 단순한 통관업무 수행이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체계의 최전선 기능을 강화하는 개념

2) 통관 편의화 및 무역 촉진 강화

-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규모에 맞게 고효율·저비용 통관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과경일쇄(跨境一鎖)*', '선변직제(船邊直提)**', '조합항(調合港)***' 등 물류 혁신 제도를 확대하여 국경 물류의 속도·비용을 국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국경일쇄 : 단일 봉인·단일 추적) 국경을 넘는 차량·컨테이너에 한 번의 봉인만으로 국경 통과 전체 과정을 통합 추적
 - **(선변직제 : 하역 즉시 반출) 컨테이너가 하선 즉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창고·검역·하역 순환 절차가 대폭 축소
 - ***(종합항 : 항만 통합 운영) 여러 항구를 하나의 허브처럼 운영하여 선박 이동·하역·세관신고를 통합하는 제도
- 국제무역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도시·항구로 편의화 조치를 확산할 계획

3) 무역 혁신과 산업 고도화 지원

-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중간재 무역, 그린무역, 첨단장비·원자재·핵심 부품 검사의 혁신을 추진
 - 또한, 새로운 무역형태(전자상거래, 해외창고지원, 가공무역 등) 규제 모델을 고도화하여 기업이 해외 시장을 확장하도록 지원함
- 공급망 안정성을 국가 전략으로 강조하며 위험분산·시장다변화를 촉진하겠다고 언급

4) 스마트 해관(智慧海關) 건설 가속화

- AI·빅데이터·IoT·지능형 장비를 활용한 '네트워크화·디지털감지·지능분석·자동화'의 현대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
 - 이를 통해 위험 품목은 더 정밀하게 단속하고 규범 준수 기업은 '무감 통관(无感通關)*' 수준에 가까운 신속 통과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통관 여부를 사전 판단해 위험품 제외 모든 화물은 물리 개입 없이 통과시키는 수준의 개혁
- 스마트 해관은 '감독 강화와 편의화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도구'로 규정

5) 국제 고표준 경제규범과의 연계 확대

- 글로벌 고표준 경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AEO(수출입안전공인기업운영자) 상호인정을 지속 확대
- 글로벌 해관 협력 체계(스마트해관 협력 플랫폼, BRICS 해관 협력 등)를 활용하여 중국의 디지털 감독 모델과 규범을 해외에도 확산
 - 이는 중국의 제도형 개방(制度型開放)을 강화하는 핵심 조치라고 설명

6) 하이난 자유무역항 봉관 운영 준비 완료

- 12월 18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전면 봉관을 앞두고 제도·시설·IT 시스템·위험관리 등 모든 준비가 완료 되었다고 발표
- '일선개방, 이선감독, 섬내개방' 구조가 확립되었으며, 129개 기업 시범사업, 300개 기업 실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봉관 이후 하이난은 중국식 고수준 개방의 상징적 관문이 될 것이라고 평가

「해관감독화물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고」 발표

- 해관총서는 해관감독화물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제238호)를 발표(2025.12.4.)
 - 국내 도로/해상 운송에서 해관이 감독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기업 및 그 차량/선박의 기록관리를 더욱 최적화하기 위함(2025.12.10. 시행)

가. 핵심내용

- 운송기업·운송수단 등록 방식을 지역 해관에 종이 또는 현장 제출방식에서 국제무역 '단일창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 운송기업 자격등록, 차량/선박 등 운송수단 등록, 등록정보 변경신청, 말소(취소)신청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 데이터 제출 및 확인

- 자료 제출을 종이 서류 제출에서 전자 전송 원칙으로 변경(시스템 장애·감독 필요시, 특정사건 조사 등 해관감독 필요시에만 종이 제출)
- 제출 서류 서식을 2018년·2022년 공고 서식을 모두 폐기하고 동 공고 서식으로 통일

나. 도입배경

1) 무역원활화, 통관효율성 제고

- 중국 정부는 2023년 이후 '국경간 무역편리화(跨境間 易便利化)'를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이며 운송 기업·운송수단의 전자화 등록은 통관시간 단축 및 인력비용 감소, 실시간 데이터 관리 등 효율 극대화

2) 화물 이동 전 구간(End-to-End) 디지털 감독 강화

- 해관 감독물품의 이동은 밀수·위변조·대체적재 등의 위험이 높아 전자데이터 기반화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고도화 가능
 - *(예) 차량/선박ID와 적재내역 실시간 연동, 운송기업의 이력정보 축적 및 신용관리 강화, 의심 이동경로 즉시 탐지

3) 전국 단일 표준화(Standardization)

- 기존 지역 해관별 제출요건·문서서식 차이로 기업이 불편을 겪었으나 국가 단일 서식·데이터 항목 도입으로 전국 통일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기업·포워더·선사트럭 운송사 등에게 예측 가능성이 제고

4) 전자문서 법적 효력 강화(정부 디지털 전환)

- 최근 중국 해관은 공문·허가서·증명서류의 전자화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종이 없는 행정 관리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의 일환

중국의 「2026년 관세조정방안」 공고(2026.1.1. 시행)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수입 관세율 및 세목 등을 조정한 「2026년 관세조정 방안(세칙위 공고 25제11호)」을 발표

1. 핵심요지

가. 관세율 조정 기조

- 2026년 관세율 조정은 단순한 세율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산업정책, 공급망전략, 대외개방 정책, 민생 정책과 결합된 관세율 조정이 핵심
 - 중국 정부도 산업 고도화, 기술자립, 민생지원, 친환경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형 관세조정임을 피력

I. 조정안 특징

- 수입 측면에서 전략성이 높은 품목에 한해 잠정관세율을 인하하는 선별적인 개방 조치 강화
 - 첨단제조 핵심부품, 친환경 원료, 의료기기 등은 관세율 인하 대상, 반대로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은 높은 세율의 잠정관세율을 폐지
- 수출 측면에서는 자원과 기초소재에 대한 통제 기조를 유지
 - 철합금, 비철금속 등 주요품목의 수출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전략자원의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춤
- HS세목 조정을 통해 신산업을 제도권에 편입
 - 로봇, 바이오 항공유 등 신산업 품목을 세목으로 신설하여 향후 관리, 통계, 정책 연계의 기반을 마련
- 자유무역협정과 특혜무역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
 - FTA, RCEP, 최빈개도국 무관세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대외 개방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
- 종합적으로 이번 관세 조정안은 '선별적 개방과 전략적 관리'를 결합한 중국식 관세 운영으로 관세를 통해 산업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

2. 주요 개편 내용

가. 잠정관세율* 운영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게 우선 적용하는 조정 세율

1) 수입잠정관세율

- 935개 품목에 대해 양허세율 및 기본세율보다 낮은 수입잠정관세율 적용(국내 공급 부족·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운영)
 - i) 첨단 제조·핵심 기술 분야(기술 자립·산업 고도화 목적)
 - 압력기용 수치제어 유압 에어쿠션, 이형 복합 접점벨트 등 핵심 부품, 첨단 소재
 - ii) 녹색전환·자원순환 분야(탄소중립·순환경재 직접 연계)
 - 리튬이온 배터리용 재생 블랙파우더, 비소성 황철광 등 자원성 원료
 - iii) 민생관련·의료분야(고령화·보건안보 대응)
 - 인조혈관, 일부 전염병 진단 시약 키트
- 잠정관세율 폐지
 - 국내 산업경쟁력 회복, 공급 여건이 개선된 이유로 초소형 모터, 인쇄기, 황산 등 품목에 대해 높은 세율의 잠정관세율을 폐지

2) 수출잠정관세율

- 107개 수출관세 품목 중 68개 품목에 대해 양허세율 및 기본세율 보다 높은 잠정관세율 적용
- 철합금(크롬철, 규소철 등), 비철금속(구리, 니켈, 알루미늄, 주석 등), 희소금속, 금속 스크랩 등 전략자원, 광물 및 금속에 대해 수출 억제 조절용 관세를 부과
- 자원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제조업원가 안정 유도

나. 세목(HS Code) 및 주석조정

- 신산업 반영하여 향후 통계·산업관리·무역정책 연계 용이를 위해 총 세목수를 8972개로 확대하고 201개에 대해 주석을 달음
- 신규 세목 신설
 - 지능형 바이오닉 로봇, 지속 가능 항공연료(SAF, 바이오 항공유), 림하(林下) 산삼
 - 신산업·신제품을 제도적으로 '관세 체계 안으로 편입'

다. 관세할당(TRQ)

- 소맥·옥수수·쌀·설탕·면화·양모·비료 등 8 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 유지, 세율 변동 없음
- 관세할당상품 세목세율표상 요소·복합비료·인산이암모늄은 할당내 세율 1% 유지하고 면화의 할당외 물량은 슬라이딩 관세를 계속 적용
 - 농산물·비료에 대한 시장 안정과 국내 보호를 병행

라. FTA·특혜관세 체계

1) 자유무역협정(FTA)

- 34개 교역상대국, 24개 FTA와 무역우대 협정에 따라 2026년에도 협정세율 지속 적용하여 RCEP, 한중FTA 등 기존 체계 안정적 유지

2) 최빈개도국(LDC)

- 중국과 수교한 43개 최빈개도국과 100% 세목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지속 유지. 그 중 관세할당 품목은 할당내 관세율만 0%로 낮추고 추가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

3) 아태무역협정(APTA) 특혜

-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세율 지속 적용

03. 일본

#자금세탁 #에토미데이트

출처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관세국, 자금세탁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25.12.4.)

※ 일본 재무성 관세국과 주요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이 일본의 경제·사회·재정·국가 안전과 건전한 국제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세관과 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개요)** 재무성 관세국은 국경 단계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주요 금융기관(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과 자금세탁 단속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자금세탁은 범죄 자금의 은닉·정당화를 통해 사회·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등 국제무역의 투명성을 저해함. 이러한 자금세탁 활동은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바, 금융기관과 세관당국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
- **(주요 협력사항)** 재무성 관세국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의 국경 통제에 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양 기관이 직면한 과제를 공유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여 국경 단계에서의 자금세탁 단속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
 - 그간 재무성 관세국은 부정무역·테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3개사 및 13개의 협·단체와 밀수 방지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민관 협력을 추진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협력의 범위를 자금세탁 단속 분야까지 확대하여 긴밀하고 제도적인 협력 기반을 폭넓게 구축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 밀수 적발(언론보도, 2025.12.11.)

-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과다 복용 시 팔다리에 경련이 나타나는 점에서 ‘좀비 담배’로 불리는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의 남용이 확산
 - 경시청은 밀매 목적의 수입 혐의로 폭력단 관계자를 체포했으며, 조직적인 불법 유통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SNS를 통해 전국 규모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당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
 - 경시청 약물·총기대책과는 2025년 12월 10일 에토미데이트를 밀수한 혐의로 지정폭력단 관계자 이자 직업 미상의 K 용의자를 의약품의료기기법 위반(수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 판매 목적의 밀수로 보고 있음

- 체포 혐의는 11월 25일 화요일, 태국에서 국제 택배를 통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무색투명 액체 약 2kg(약 2,000회분 사용량)을 수입한 것으로, 이는 밀수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 세관 직원이 소포 내용물을 수상히 여겨 검사한 결과, 병에 담긴 에토미데이트 함유 액체를 발견했음. 수령자는 용의자의 자택이었고, 세관의 통보를 받아 경시청이 수사를 진행
 - 에토미데이트 밀수 적발은 경시청으로서는 첫 사례임. 용의자는 폭력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폭력단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밀수가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
- 에토미데이트는 1960년대 유럽 제약회사가 항진균제로 개발한 물질로, 이후 최면 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져 해외에서는 내시경 검사 시 진정제나 마취 유도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의약품으로 승인되지 않았음
- 확산 징후가 처음 확인된 지역은 오키나와현임. 2025년에 ‘웃음가스 마취’라고 부르며 전자담배용 액상에 섞어 흡입하는 젊은 층이 증가했음. 후생노동성은 2025년 5월, 에토미데이트를 지정약물로 추가하고 의료 목적 외 사용과 수입, 소지를 금지
- 도쿄대학의 마키노 유키코 연구원(약학)은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할 경우 호흡 억제, 심장 등의 순환 기능 저하, 의식 장애를 유발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신체 떨림이 나타나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도 남용의 영향으로 설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구매가 늘고 있음. 경시청이 소지 혐의로 체포한 남성은 SNS에서 1병당 1만 5천 엔에 구매했다고 진술
 -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도 확산 요인으로 지목됨. 전자담배용 액상에 혼합해 흡입하는 방식은 주사 보다 심리적 장벽이 낮음. 다만 마키노 연구원은 흡입 역시 정맥 주사와 같은 방식으로 뇌에 작용한다고 설명
- 이 같은 남용 확산은 세계적인 현상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도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이 확인됐음. 2024년에는 태국 수사당국이 방콕에서 밀조 거점으로 추정되는 창고를 적발해 화학물질과 장비를 압수
- 코카인과 각성제 등 기준 약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이 에토미데이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 한국에서는 진정제 ‘프로포폴’의 남용이 문제가 되어 규제가 강화된 이후,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사용이 확산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 사건의 적발자 수는 1만 3천명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대마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남용이 두드러지고 있음
 - 수사 간부는 “에토미데이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단계를 포함한 불법 유통 경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

04. 인도네시아

#금 수출세 #면직물 #인도네시아 공휴일

출처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금 수출세 부과 시행(2025.12.23. 시행) 및 대내외 동향

1. 관련 규정 및 적용 대상

- 재무부장관령 제80호(PMK No.80/2025) 및 재무부장관결정 제16호(16/MK/BC/2025)
- 국제 금 시세와 제품의 가공 단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
 - 수출기준가격은 133,912.59USD/KGM으로 책정(모든 제품유형 동일)

제품유형*	시세 \$2,800~\$3,200 미만	시세 \$3,200 이상
도레(Dore) (ex 7108.12.10/90)	12.5%	15%
미가공 금(도레 제외) (ex 7108.12.90)	10%	12.5%
미가공 금(Cast Bars 등) (ex 7108.12.10)	7.5%	10%

*HS분류에 따른 정확한 제품유형은 불임파일의 재무부/장관령을 참조

2. 주요 특징

- (차등세율 적용)** 가공 단계가 낮을수록 높은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출세를 통한 금 산업의 다운스트림 생태계 구축을 추진
- (세수 확보)** 해당 정책을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약 1억 8,000만 달러(약 3조 루피아)의 추가 국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액은 2025년 9월 기준 16.4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는 2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3. 대내외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에 금 제련소 건설 및 가공 시설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IMA)는 이번 세금이 도래 형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광산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IMA daily news)
 - 인도네시아 금 및 보석업자 협회(APEPI)는 정부의 다운스트림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나, 수출세가 가공업계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Binis Indonesia)
 - 주재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규정을 25년 말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 중 하나로 꼽으며, 하류산업화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소개(CNBC indonesia, Tempo 등)
 - 인도네시아가니켈, 구리에 이어 금 수출세를 도입하며 자원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시점을 공략해 국가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Reuters)

면직물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발효 동향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6년 1월 10일부터 3년간 면직물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1. 관련 규정 및 부과 배경

- 재무부장관령 제98호(PMK No.98/2025)
- 무역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생산량과 판매,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시행

*조사기간(2021년~2024년)동안 생산량 10.21% 감소, 국내 판매 10.45% 감소, 고용 6.62% 감소 등

2. 적용 품목 및 세이프가드 관세율

- 면직물 계열(HS 5208, 5209, 5210, 5211, 5212 내 16개 세번*)
 - *세부 HS코드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참조
- 총 3년에 걸쳐 시행되며, 점진적으로 관세율 인하
 - 관세율(미터당) : 1년 차 Rp 3,000~3,300 → 2년 차 Rp 2,800~3,100 → 3년 차 Rp 2,600~2,900

3. 적용 예외

- 한국을 포함한 수입 점유율이 3% 미만인 122개 개발도상국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기준 주요 수입국 : 중국(82.4%), 베트남(5.04%), 인도(4.84%), 홍콩(3.09%) 순
- 단, 면제 대상국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선적일 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재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협정	규정	조항	내용
한-아세안	PMK 169.2020	Pasal 7(1)e	diterbitkan sebelum, pada saat, atau sampai dengan paling lambat 3 (tiga) hari kerja sejak Tanggal Pengapalan atau Tanggal Eksportasi; (선적일 또는 수출일 이전, 당일 또는 선적일/수출일로 부터 최대 3근무일 이내 발급되어야 한다)
CEPA	PMK 11.2024	Pasal 7(1)f	diterbitkan sebelum, pada saat, atau sampai dengan paling lambat 7 (tujuh) hari sejak Tanggal Pengapalan atau Tanggal Eksportasi; (선적일 또는 수출일 이전, 당일 또는 선적일/수출일로 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되어야 한다)
RCEP	PMK 209.2022	Pasal 8(1)e	diterbitkan sebelum atau pada Tanggal Pengapalan atau Tanggal Eksportasi; (선적일 또는 수출일 이전 또는 그 날짜에 발급되어야 한다)

● 2026년 인도네시아 공휴일

*한-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충족여부 등 업무에 참고

가. 2026년도 인도네시아 공휴일

일자	인도네시아 명칭(영문)	한국 명칭
1월 1일(목)	Tahun Baru 2026 Masehi (New Year's Day)	신년
1월 16일(금)	Isra Mikraj Nabi Muhammad S.A.W.(Prophet Muhammad Ascending Day)	모하메드 승천일
2월 17일(화)	Tahun Baru Imlek 2577 Kongzili (Chinease New Year's Day)	구정
3월 19일(목)	Hari Suci Nyepi Tahun Baru Saka 1948 (Baliness New Year's Day)	힌두 신년
3월 21일(토)~3월22일(일)	Hari Raya Idul Fitri 1447 Hijriyah (01 Syawal)	르바란
4월 3일(금)	Wafat Yesus Kristus (Good Friday)	성금요일
4월 5일(일)	Kebangkitan Yesus Kristus (Easter)	부활절
5월 1일(금)	Hari Buruh Internasional (International Labor Day)	근로자의 날
5월 14일(목)	Kenaikan Yesus Kristus (Ascension day, Holy Thursday)	예수승천일
5월 27일(수)	Idul Adha 1447 Hijriyah (Festival of Sacrifice))	이슬람교 희생제
5월 31일(일)	Hari Raya Waisak 2570 BE (Buddha's Birthday)	석가탄신일
6월 1일(월)	Hari Lahir Pancasila(Pancasila Day)	판차실라 선포일
6월 16일(화)	1 Muharam Tahun Baru Islam 1448 Hijriah (Islamic New Year)	이슬람교 신년
8월 17일(월)	Proklamasi Kemerdekaan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8월 25일(화)	Maulid Nabi Muhammad S.A.W.(The Prophet Muhammad's Birthday)	모하메드 탄생일
12월 25일(금)	Kelahiran Yesus Kristus(Christmas Day)	성탄절

I. 연장휴일(Cuti Bersama)

일자	인도네시아 명칭(영문)	한국 명칭
2월 16일(월)	Tahun Baru Imlek 2577 Kongzili (Chinease New Year's Day)	구정
3월 18일(수)	Hari Suci Nyepi Tahun Baru Saka 1948 (Baliness New Year's Day)	힌두 신년
3월 20,23,24일 (금,월,화)	Idul Fitri 1447 Hijriyah (01 Syawal)	르바란
5월 15일(금)	Kenaikan Yesus Kristus (Ascension day, Holy Thursday)	예수 승천일
5월 28일(목)	Idul Adha 1447 Hijriyah (Festival of Sacrifice)	이슬람교 희생제
12월 24일(목)	Kelahiran Yesus Kristus (Christmas Day)	성탄절

05. 태국

#전자상거래 #소액면세폐지

출처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저가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폐지(2026.1.1. 시행)

※ 태국 관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1바트 이상)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2025년 11월)

● 시행배경

- **(공정 경쟁)** 해외 온라인 소형 물품이 관세 면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SME)과 소매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세 면제 폐지를 통하여 불공정한 세금부담 차이 해소
- **(조세형평성)** 해외 저가 전자상거래 상품도 국내 판매와 같은 VAT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
- **(과세 사각지대 제거)** 전자상거래 과세범위를 1,500바트 이하의 물품으로 확대하여 소액물품이 대량·반복적으로 수입하면서 과세를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
- **(중국산 수입품 급증)** 미국 내 수요 감소로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태국 내 저가 상품 공장 폐쇄가 지속됨
- **(글로벌 관행)**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소형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로, 유럽연합도 저가 (150유로) 전자상거래 소포에 고정 수입세(물품당 약 3유로)를 부과할 예정(2026년 7월 예정)

● 주요내용

- 202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1바트 이상)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 특히, 그동안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1,500바트(약 70,530원)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10%의 일괄관세와 7%의 부가가치세 부과

06. EU(유럽연합)

#식품수입통제

출처 :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EU 집행위, 비EU국가 대상 식품 수입 통제 강화 동향

1.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9일, EU 시민들에 대한 식품 안전 보장 및 EU 생산자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EU로 수입되는 식품,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 “수입 통제에 관한 이행 대화*(Implementation Dialogue on import controls)”에서 Oliver Várhelyi 보건·동물복지 담당 집행위원은 EU 국경 및 제3국에서 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시
 - * 이해관계자들과 EU의 높은 식품 안전, 동물 건강 및 복지, 식물 건강 기준을 유지하면서 수입 통제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논의
- EU로 반입되는 모든 동물, 식품 및 사료, 식물은 EU의 SPS 요건과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모든 무역파트너에게 적용됨
- 이번 조치는 EU 농업계와 여러 회원국 요청에 따른 것이며, EU 농업인들이 불공정한 국제 경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2. 이날 발표된 조치는 2025년 초 EU 집행위가 발표한 "농업 및 식품 비전(A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에서 밝힌 수입 통제 강화 약속에 따른 것으로, 감사 건수 증가, 전담 태스크포스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❶ 향후 2년간 비EU 국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횟수(number of audits)를 50% 증가시키고, EU 국가에 대한 통제 수준은 유지
- ❷ EU내 국경 통제소(Border Control Posts)에 대한 감사를 33% 증가시켜 각 회원국이 EU 기준에 맞춰 국경 검사 및 검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 강화

- ③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과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점검 빈도 증가
 - ④ EU 집행위원회는 추가 점검을 수행하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 제공
 - ⑤ 수입 통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담 EU 태스크포스를 설립(살충제 잔류, 식품 및 사료 안전성, 동물 복지에 중점)하고, 특정 수입 품목 및 국가에 대해 EU 차원에서 조율된 모니터링 강화(coordinated EU monitoring action) 및 검사 빈도 조정
 - ⑥ EU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0여 명의 국가 기관 직원 대상으로 교육 제공
 - ⑦ EU 내에서 이미 금지된 고위험 살충제(hazardous pesticides) 잔류물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방지를 위해 관련 수입 규정 업데이트
- 3. EU 집행위는 고위험 살충제가 EU에서 금지된 뒤에도 수입 제품을 통해 다시 EU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와 표준 정합성(alignment)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5년 11월 25일부터 수입품을 통해 EU에 유입되는 유해 살충제에 대한 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수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2026년 중순까지 관련 분석을 완료하여 EU의 생산 기준과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요건 간 상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적 체계를 개정할 예정